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82
----------	------

2024년 4월 30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2일, 이희원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희원 의원)

#### 1. 제안이유

- 2024년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 개편으로 교육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각 시도교육청 주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정책사업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시 국가정책 또는 지방정책사업의 설계 용역 입찰 공고 전 사업계획서 첨부 및 제출(안 제9조제3항제4호).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82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개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기반하여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관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대상 사업 중 국가정책 사업의 경우 설계공모 이전에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제9조제3항제4호1)) 개정한 바 있습니다.

---

1)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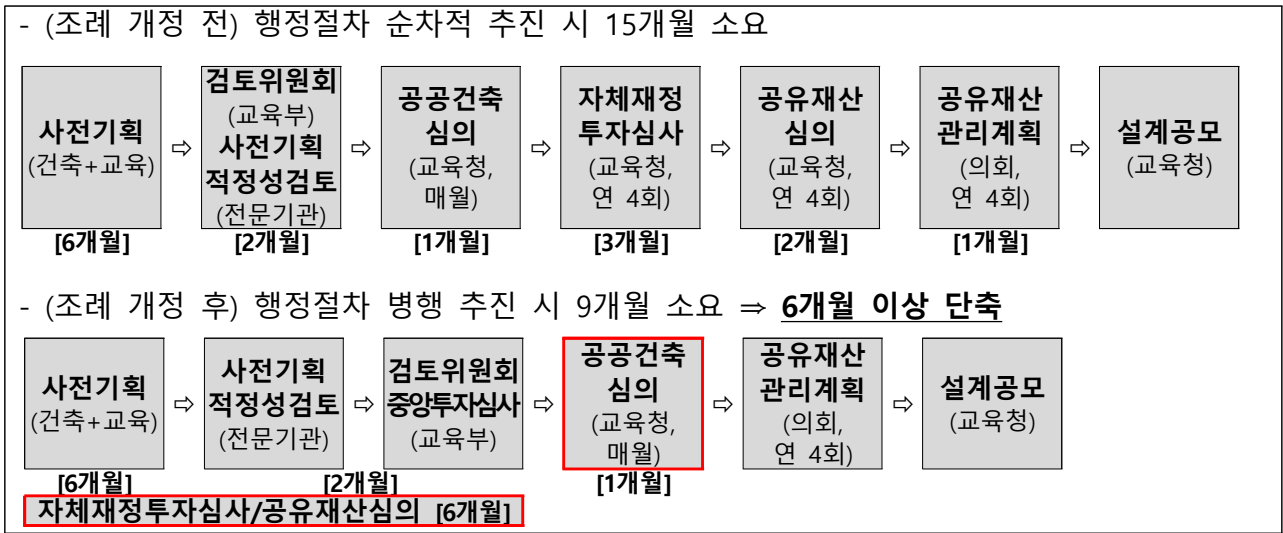
1. ~ 2. (생략)

② (생략)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이로써 현재 공공건축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국가정책 사업의 경우에 한해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먼저 거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가정책 사업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표-1]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 변경 전후 비교



- 그러나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sup>2)</sup>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이었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sup>3)</sup>을 2024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개편하면서 국고 지원 역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국가정책 사업(개축 등)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신설>  
 ④ (생략)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② (생략)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2) 보도자료: 교육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한국강사신문, 2023.12.11.)  
 3)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식 친환경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

**[표-2]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개편 내용**

구분	'21~'23	'24부터
사업명	그린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 주체	국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재원구조	국비 + 지방비	지방비(교육환경개선사업비)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오던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절차 간소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바, 비록 사업의 주체는 바뀌었으나 동일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추진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 개편에 따라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088, 2024.4.1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가정책 사업(개축 등)” 을 “국가정책 또는 지방 정책 사업(개축, 리모델링 사업에 한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p> <p>① · ② (생   략)</p> <p>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u>국가정책 사업(개축 등)</u>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p> <p>④ (생   략)</p>	<p>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국가정책 또는 지방정책 사업(개축, 리모델링 사업에 한정)</u>----- -----</p> <p>④ (현행과 같음)</p>